

2020년도 제22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2020. 9. 28.(월요일)
- 방 법: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 위원(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1건(안건번호 제2020-125632호~제2020-125701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금번 심의안건들은 모두 방송 콘텐츠의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사안들로서, 예컨대 (방송) 지비에트 (2020), (방송) 방과 후 제방일지 (2020)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불법 복제 전송된 방송 콘텐츠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조치의 권고에 대해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125632호~1256701호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 권고" 의견임. 단, 기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의견임.
- C 위원: ○○○○ 사이트의 방송 그레이트 프리텐더 등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 방송 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안건번호 제2020-125632호~125701호 ○○○○ 사이트의 방송 그레이트 프리텐더 등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 방송 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0년 제22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9. 28.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